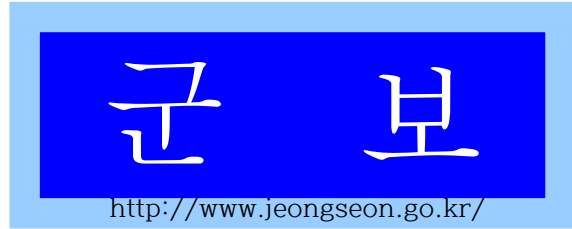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61호 2021. 4. 19.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802호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803호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5
- 정선군 조례 제2804호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9
- 정선군 조례 제2805호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2
- 정선군 조례 제2806호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16
- 정선군 조례 제2807호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26
- 정선군 조례 제2808호 정선군 투어버스 운영 조례.....33
- 정선군 조례 제2809호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36

- 정선군 조례 제2810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41
- 정선군 조례 제2811호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48
- 정선군 조례 제2812호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5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72회 정선군의회(2021. 4. 8.)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26.)에서 의결된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02호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2조(구성) ①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5명</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u>3명의</u>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u>정선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2조(구성) ① ----- ----- ----- <u>7명</u>----- ----- ----- ----- --. 1. <u>5명의</u> 위원은 <u>판사·검사·변호사</u>----- ----- ----- ----- ----- ----- -----. 2. (현행과 같음) ② ----- -----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u>3명</u> 중에서 선임한다. 2. (생략) ③ (생략)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1. ----- <u>5명</u>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u>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u> 2. <u>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u> 3.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u>
---	---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인원수를 변경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도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총 인원 및 위촉위원 수 변경(제2조)

- 총원: (기존) 5명 → (변경) 7명
- 위촉위원: (기존) 3명 → (변경) 5명
- 자격: (기존) 법관 → (변경) 판사·검사·변호사

나. 서면심의 규정 신설(제7조)

제272회 정선군의회(2021. 4. 8.)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03호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주민과 군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으로 농촌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촌 활성화 위원회) 군수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촌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농촌중심지 및 권역 추진위원장
2.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대표
3.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선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분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업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민간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무형의 지역자원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3.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연수, 컨설팅 및 지역역량 강화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6.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7. 생활권 활성화, 관광·체험마을 만들기, 신(新)활력 플러스, 귀농귀촌 및 청년활동 장려
8.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정부의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이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선군 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정선군 농촌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4조)

-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군 농촌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정선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제10조)

-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선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제12조)

-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 예산지원(제13조)

-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2회 정선군의회(2021. 4. 8.)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26.)에서 의결된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04호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제4조의2제5항에 따라</u> ----- ----- --.
제12조의2(사기진작) 군수는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기진작)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u>
<u>4.</u> (생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 제안이유

반장 임무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기진작 및 행정지원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제1조)

나.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2조의2 제4호)

제272회 정선군의회(2021. 4. 8.)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05호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를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로, “발전에 이바지함”을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군수”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로 한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사업
2. 군정 모니터링 활동 등 군정 홍보사업
3.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5조제2항 중 “동우회”를 “행정동우회”로 한다.

제6조 중 “행정동우회의”를 “그 밖의 보조금”으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을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행정 경험</u> <u>이 풍부한 정선군 지방행정동우</u> <u>회를 육성 · 지원하여 행정 발전</u> <u>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u> <u>지역 발전에 이바지함</u> 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행정</u> <u>동우회법</u> 」에 따라 설립된 정선 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 - <u>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u> <u>함</u> ----
제2조(지원사업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 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사업 등) ----- ----- ----- ----- -----.
1. <u>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자연</u> <u>정화 활동 사업</u>	1. <u>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u> <u>사업</u>
2. <u>군정에 관한 계도 · 홍보 및</u> <u>시책 협조 사업</u>	2. <u>군정 모니터링 활동 등 군정</u> <u>홍보사업</u>
3. <u>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u>	3. <u>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u> <u>봉사활동</u>
4. 그 밖에 <u>군수가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사업</u>	4. ----- <u>군정 발전을 위하여</u> <u>군수</u> -----
제5조(행정자료 제공 · 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 · 지원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u>동우회</u> 는 제1항에 따라 제공	② <u>행정동우회</u> -----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 다.	----- -----.
제6조(준용) <u>행정동우회의</u> 지원 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u>정한 것</u> <u>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u> <u>계법령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u> <u>관리 조례」</u> 에 따른다.	제6조(준용) <u>그 밖의 보조금</u> ---- ----- <u>규정되지 아니</u> <u>한 사항은</u> ----- ----- -----.

☐ 제안이유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법안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여,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법률적 근거(지방행정동우회법) 명시(제1조)

나.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 규정(제2조)

제272회 정선군의회(2021. 4. 8.)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06호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조작,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4.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건축물 등 지상·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6. “전담부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한다) 전체의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현업부서”란 시설물 등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활용하는 부서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업무 등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유관기관”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도시기준점”이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공공삼각점 및 공공수준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과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 지식 및 기술 습득
4.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 협력 및 교류

제7조(업무지정) ① 군수는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 가. 공간정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갱신
- 다.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라. 공간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 마. 도시기준점 설치 및 관리
- 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

2. 현업부서

- 가. 신규·수정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를 기 반으로 설계

수행

다.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 전 전담부서와 협의 및 성과물(전산파일) 제출
라.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및 점검

- ②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서류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전산파일)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자료 등의 갱신)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신설, 변경, 폐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담부서에서는 각종 시설물 자료의 입력을 위해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변경 또는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 전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갱신된 전산파일(도면)과 전문기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공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관한 사업 추진 시 공간정보 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공간정보 구축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성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까지 자료의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④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따라야 하며, 신설·변경되는 시설물 등은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실측하여 정확한 위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법 제31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을 주관하고, 상시 갱신체계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유관기관 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간정보체계 통합관리 기관인 군에 갱신한 자료

를 전산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무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무서와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①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고,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분(백업파일)을 제작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3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① 현업무서에서는 지형·지물이 변동되는 공사를 할 경우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현업무서 및 유관기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후 그 성과를 전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목록정보 작성 및 유통) ① 군수는 군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정보와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용 용도의 공공성
2. 개인 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사용 목적이 완료된 후에는 즉시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납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보안상 자료제공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

③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이동식 저장장치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제10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2.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9조(보안관리) ① 군수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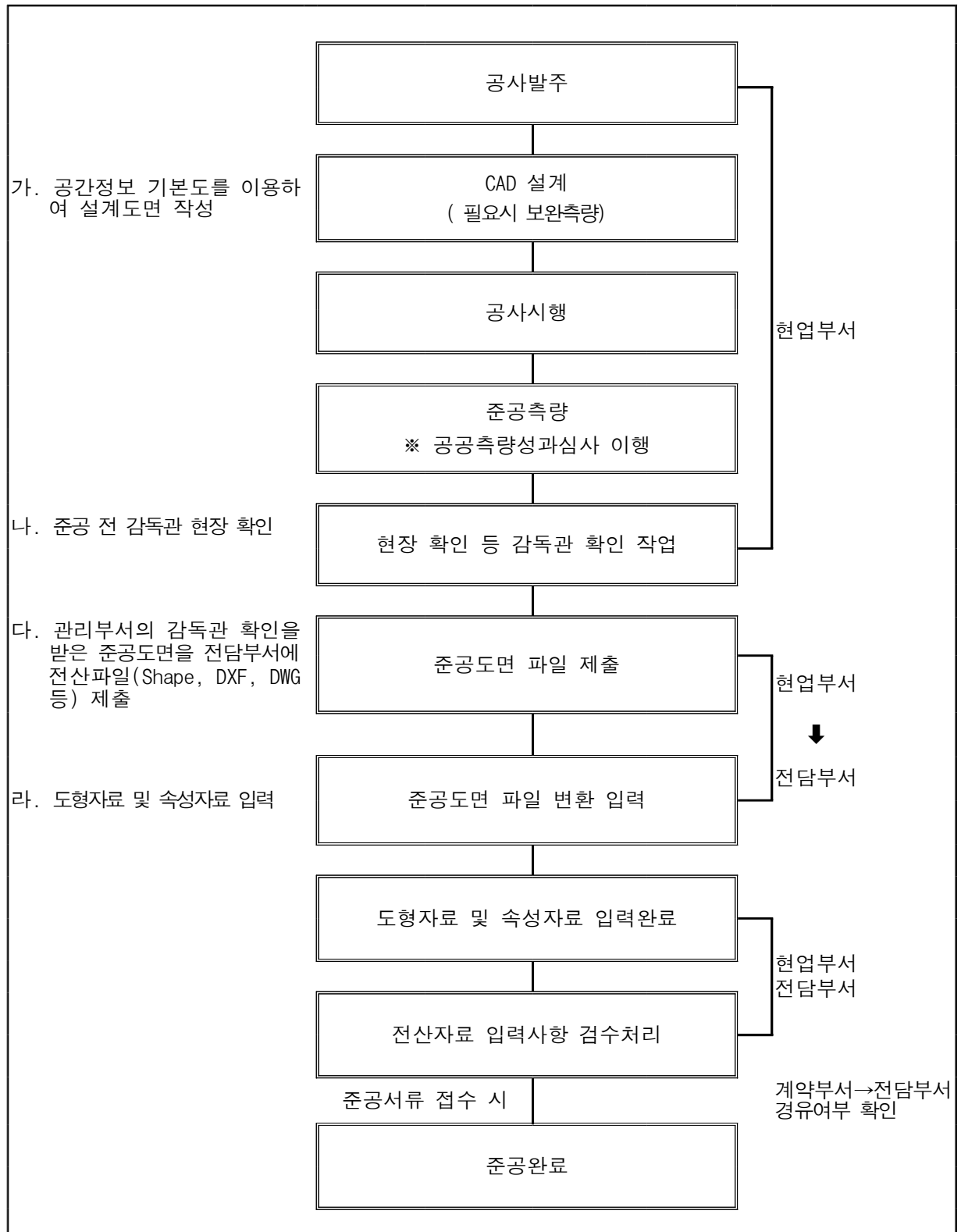
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기반시설물 준공도면에 의한 공간정보 갱신 절차(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

사업구분	신규(), 변경(), 증설(), 폐지(), 그 밖의()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공간정보 DB 작성	일 자		작성자		확인자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업부서의 장 (인)

- 붙임 1. 전산파일(Shape, DWG 등)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사용목적				
관리대책				
신청내용	자료등급	☐ 비공개 ☐ 공개제한 ☐ 공개		
	자료종류			
	도엽번호			
	위치		수량	부매
	축척			
	제공형태	① 보조기억매체 ② 도면출력 ③ 기타 ()		
	수수료	원		

「정선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본인은 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반 보안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공간정보 자료삭제 확인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
- 사업시공자(용역업체) :

○ 반출자료

○ 반출장소 및 기기

- 장 소 : ○○회사(주소)
- 기 기 명 : ○○○가 사용하는 PC
- 작 업 자 : ○○과장 ○○○
- 연 락 처 :

상기와 같이 반출된 공간정보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삭제자 부서 :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부서 :	직급 :	성명 :	(서명)

정선군수 귀하

☐ 제안이유

가.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자료를 최신 상태로 유지·갱신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하고,

나. 공간정보체계 통합관리,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전산자료 등의 갱신 (제8조)

-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신설, 변경, 폐기 등)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 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

나. 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도 등의 작성(제9조)

- 도로기반시설물의 공사 시 사업 준공 전 지하시설물도 등 갱신된 전산파일(도면) 과 전문기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한 공문을 첨부하여 공간정보 변동 통보서 제출
-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사업 추진 시 공간정보 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

다. 공간정보의 통합관리(제10조)

-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을 주관하고 상시 갱신체계 및 운영방안을 강 구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제272회 정선군의회(2021. 4. 8.)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07호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착한 상가”란 착한 임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상가건물(건물 안에 있는 독립된 상가(商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육성과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군수는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

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③ 군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제7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에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상가임대차 계약서

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착한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착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제4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2. 전기요금 지원

3. 관계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또는 지원

4. 착한 임대인 인증서

② 군수는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제 1 호]

[앞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임대차 현황	임대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 락 처 :		
	임차인	성명 :	연 락 처 :		
	소재지				
	점포명		점포면적(㎡)		
임대료 인하 내역	인하 기간				
	현재 보증금 / 월세		월세 총 인하액		
지원 사업 선택	1. 지방세 감면				☐
	2. 전기 요금 지원				☐
	3. 수도 요금 감면(지원)				☐
	4. 착한 임대인 인증서 신청				☐

위와 같이 20 년도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임대·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3.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에 한정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료(월세) 인하 내역

[illegible]

[별 지 제 2 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는(은) 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차임이나 보증금을無理하게 인상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협약서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제안이유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착한 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평균 임대료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라. 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8조)

-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전기요금 지원
- 관계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또는 지원
- 착한 임대인 인증서

바. 착한 임대인 지원금 등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제272회 정선군의회(2021. 4. 8.)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투어버스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08호

정선군 투어버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투어버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어버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 및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 ① 투어버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투어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어버스 관리 및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어버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이용료 등) ① 투어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정선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어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 ~ 3조)

나.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4조)

제272회 정선군의회(2021. 4. 8.)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09호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해당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의 전문 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구입해야”를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한다.

제7장(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유물평가위원회

제28조(유물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2.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여부와 역사적·문화적 가치 및 가액 평가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위원회는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 시마다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박물관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2. 문화재청 또는 시·도 소속 전직·현직 문화재 위원·전문위원
3. 수집대상 유물, 기증·기탁신청 유물 해당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4. 민속학 또는 역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정평가 능력이 있는 사람
5. 유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0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평가위원의 해촉) 군수는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유물평가와 유물 취득 시 박물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평가대상 유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8조를 제32조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박물관 관람료(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관람료	비고
아리랑박물관	2,000원 이상 정선아리랑상품권	

[별표 2]

박물관 시설물 대관료(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면적	사용기준	대관료	비 고
아리랑 박물관	76.51m ²	1일	35,000원	○ 기준일 1일 미만시간은 사용기준으로 본다.

☐ 제안이유

운영이 중지된 미등록 박물관 2개소(향토박물관, 추억의박물관)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 시설 확충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박물관의 명칭 및 위치 정비(제4조)

- 4조제1호 및 제3호 삭제

나. 유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문 신설(제28조부터 제31조)

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1」 개정

- 별표 1 박물관 관람료(향토박물관, 추억의박물관 삭제)

라.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표2」 개정

- 별표 2 박물관 시설물 대관료(추억의 박물관 삭제)

제272회 정선군의회(2021. 4. 8.)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10호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선군”을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정선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을 “5일 전까지 별지 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아리샘터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1-8	
신동 생활문화센터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565	
북평 생활문화센터	정선군 북평면 북평3길 73	
임계 생활문화센터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사용시설		금 액	비 고
	기본시설	부대시설		
아리샘터	전시실		20,000	사용기준(1일) : 오전 10:00 ~ 18:00
	다목적실		10,000	1. 사용기준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야간 : 18:00 ~ 21:00(3시간) 2.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연습실1		10,000	
	연습실2		5,000	
		녹음실	10,000	
신동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무료	
	연습실			
	회의실			
북평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무료	
	연습실			
임계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무료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주 소	우편번호 :			
	단 체 명		전 화	일 반()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 업 자)	-		
사용목적(행사명)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 용 시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사 용 횟 수	오전 : 회	합 계	
	년 월 일 시 분까지		오후 : 회	() 일	
			야간 : 회	() 회	
기타서류		행사 및 공연 계획서 1부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정 선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정선군은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대관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대관신청
2.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3.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간 보관
4. 동의거부 권리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 하

■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우편번호:			
	단 체 명		전 화	일 반() -	
				휴대폰() -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	-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간)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감면사유					

「정선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제안이유

가. 문화소외 지역민들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 주민 커뮤니티공간의 활용 등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

나. 생활문화센터 추가 조성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는 조문 추가(제1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근거 조항 마련

나.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일 변경(제5조제1항)

- (당초) 사용일 10일전 → (변경) 5일전

다. 생활문화센터 추가 조성에 따른 명칭과 위치 수정(별표1)

- 기존 1개소 → 4개소

라. 사용료등 변경(별표2)

- 유료 : 아리샘터

- 무료 : 신동·북평·임계 생활문화센터

마.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시간 조정 내용 추가 (별표 2)

바. 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등 변경에 따른 서식 수정(별지 제1호, 제3호서식)

제272회 정선군의회(2021. 4. 8.)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11호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자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정선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올림픽 유산”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이하 “동계올림픽”이라 한다)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2.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이란 동계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유산보존을 위한 주민 참여활동 등을 말한다.
3. “지역사회”란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을 위하여 참여활동을 추진하는 군민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림픽 유산이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2.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교류사업
3. 동계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올림픽 도시 간 교류 지원) 군수는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국내·외에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올림픽 개최도시와의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자산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실현과 한반도 평화의 시발점이 된 올림픽의 유산을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제3조)

나.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시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제4조)

다.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국내·외에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류 장려(제5조)

제272회 정선군의회(2021. 4. 8.) 및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12호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선군 체육진흥 및 체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노후 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6. “생활체육 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정선군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

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 연령, 장애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우수선수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운영
2. 우수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
3.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4.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운영
5.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
6.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군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지원
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5.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5.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노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선수와 노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노인 생활체육의 개최 지원
5. 각종 노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
7.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조 및 제3항에 따라 정선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

② 정선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경비·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설립을 인가한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검사)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적용범위 등을 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나.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진흥의 활동사항을 규정(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보조금 지원 단체 및 지원 범위를 규정(제9조)

라.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권리를 규정(제11조)